

# 식품등의 수입요령

입 기 섭/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보건서기관

## 1.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 1) 영업신고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소를 관할 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식품등 수입판매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식품등 수입판매영업이라 함은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설기준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영업활동을 하기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단,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위생기준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4) 위생교육

가. 영업허가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2. 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서울, 부산, 인천, 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 국립검역소장)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구, 대전, 광주지방청장을 제외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신고에 필요한 서류

가.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나. 수입승인서 사본(대외무역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

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
- 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의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 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 라. 이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바. 식품첨가물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 다만, 혼합제제의 성분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등

자.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제7조에 규정)

-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기구류 또는 수출후 반송되어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기구류
- 무상공급 목적으로 무환으로 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단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의 문구를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3) 사전수입신고(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제3조)

-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을 민원처리 기산일로 보아(이 경우 4~5일 이전 신고한 것은 3일전을 기산일로 본다) 서류검사를 완료하고, 보세구역등에의 입고즉시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에 대하여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대상은 검체채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입고사실의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신고서식

식품등 수입신고서의 양식은 전산양식으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5)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수입자)→접수(처리기관)→검토→선결→현지확인(담당자)→검체채취(정밀검사의 경우)→분석검사(시험분석실)→적합·부적합분류→결재→신고필증교부(적합)·부적합통보(부적합)

### 3. 검 사

#### 1)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첨가물. 이 경우 제품 검사성적서는 수입통관후 제출할 수 있다.

라.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바.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아.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동일식품"등이라 한다)

①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

②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③ 농·임·수산물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포장장소의 번지까지 일치하는 경우)가 같은 것

##### ●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색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다. 관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거량의 5배이하인 식품등(별표7에서 정한 수거량기준)

●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나. 국내외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다.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동일식품등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등(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마.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

바.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동일식품등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2) 검사방법등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등

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검체채취량은 별표7의 수거량에 의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나.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 결과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와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등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처리기한

가. 서류검사 : 3일

나. 관능검사 : 5일

다. 정밀검사 : 18일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교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와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가. 신선한 식품류

- ①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패류
-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일류, 채소류, 감자 등 서류, 버섯류, 향신식물 또는 야생식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다.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수입식품등의 검사지침 제10조)

다.1 포장지 재질 미표시

다.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 미표시

다.3 식품의 유형 미표시

다.4 착향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착향료 미표시

다.5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미표시

다.6 냉장, 건조, 분말, 살균,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미표시

다.7 사용용도 및 희석배수 미표시

다.8 열량표시가 상이한 경우

다.9 표시기준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경우

라.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부적합식품등의 통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별지 제5호의2서식)

●부적합식품등의 처리

부적합통보를 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②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③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

격중 수분함량등 경미한 성분규격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으로 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 4.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5호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 1)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절차 및 요령(수입식품등의 검사지침 제12조)

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6]2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당초 수입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자

신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동일법인내의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식용외 다른 용도(공업용 또는 사료용)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시 확인서류

- 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이 발급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 나.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고자하는 물량 및 사유서
- 다. 당해 원료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용기·포장류제조업소에 판매, 일시적 교환, 임대 또는 재계약하는 자 및 구입, 교환 또는 임차하는 자의 영업허가(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하는 기관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마.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만한다)

##### ●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결과 통보등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를 목적외 용도사용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